

2013년 7월 1일부터

새로운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적용

돼지 축종에 맞게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하여
단일등급체계인 1+, 1, 2, 등외등급(4개 등급)으로 적용됩니다.

개정내용

-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하여 단일등급체계로 개선
 - (개정) 1+, 1, 2, 등외등급(4개 등급)
- 등급판정방법의 일원화
 - 온도체 등급판정방법(전체), 냉도체 육질측정(희망자)은 항목별 측정결과만 제공
- 등외등급 상한 도체중량 범위 설정
 - 도체중량 탕박 110kg 이상·박피 100kg 이상 등외등급으로 적용
- 유통 규격을 감안하여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범위 조정 (도체중량, 등지방두께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변경가능)
 - 1+등급 도체중량 하한 1kg 상향, 상한 2kg 하향, 등지방두께 하한 1mm 상향, 상한 2mm 하향 조정
 - 1+등급 도체중량: (현행) 83~95kg → (개선) 84~93kg,
 - 1+등급 등지방두께: (현행) 17~26mm → (개선) 18~24mm



정부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과 관련, 기존에 부처별로 관성화 된 정책 시스템을 개선, 부처 간 '융합정책을'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매월 주요 부처의 정책현안을 게재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. 이번 5월호에는 국토교통부의 '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' 관련 홍보자료입니다.

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



하우스푸어 지원

- 프리워크아웃 확대
 - 대상: 연체우려,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 대상
 - 금융권·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환기간 연장, 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 등 채무조정
- 캠프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
 - 대상: 3개월 이상 연체차주
 - 캠프가 3개월 이상 연체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
 - 차주등의 시 원금상환유예,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
-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
 - 대상: 원리금 상환 어려운 정상 차주
 - 주택금융공사기 대출채권 매입하여 은행금리 수준 이하 납입
 -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
- 주택매각 희망자: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
 -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, 해당주택을 임차, 거주
 - 임대기간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 부여
 -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, 미매각 주택은 LH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
-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
 -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춰(60세 → 50세)
 -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, 부채상환



행복주택 공급

- 철도부지, 유휴 국·공유지 등 공공보유 저렴한 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
- 향후 5년간('13~ '17) 총20만호 공급(인허가 기준)
-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대학생 등 사회활동 왕성계층(60%), 주거취약 계층(20%) 우선공급
- 소득 등 적정 부담능력 고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



렌트푸어 지원

- 목돈 안드는 전세 I :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
 -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, 세입자는 이자납부
 - 수도권 5천, 지방 3천 한도내 대출
 -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억(지방 2억) 대상
 -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보증금 대출분에 각종 세제혜택
 -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
- 목돈 안드는 전세 II :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
 -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
 -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 인정하여 담보력 강화
 -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



생애최초 구입자, 근로자·서민 기금지원

-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
 - 소득요건 완화(부부합산 5.5천 → 6천만원)
 - 금리인하(3.8% → 3.3~3.5%)
 - DTI 자율적용(13년 한시)
 - 30년만기 신설
 - LTV 완화(60 → 70%, ' 13년 한시)
- 저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
 - 소득요건(부부합산 4 → 4.5천만원), 대출한도 상향(8천 → 수도권 1억, 지방 8천만)
 - 지원금리 하향(3.7 → 3.5%)
 -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
 -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 허용
- 근로자·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
 - 소득요건 완화(부부합산 4천 → 4.5천만원)
 - 금리인하(4.3 → 4.0%)
-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
 - LTV 70% 이상(85㎡ 이하이면서, 6억 이하인 주택) 또는 무주택자인 세입자 현 거주 임차주택(거주 1년이상) 매입시, 저리 구입자금(3.5%) 지원